



- 공동주택(아파트) 화재안전 교육훈련 추진을 위한 - 업무협약서

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강남소방서는 강남구 내 공동주택(아파트) 화재안전 교육훈련 실시와 관련하여 상호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

본 협약은 공동주택(아파트)의 화재 재난예방 및 발생시 효율적인 대처로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화재안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데 있어 공동 추진·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약내용 및 범위)

양 기관은 당해 기관의 제반 규정과 예산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약을 이행하며 그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1. 공동주택(아파트) 화재안전 교육훈련 계획(안)은 다음과 같고,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를 통하여 보완 및 확대 추진하도록 한다.
 - ① 시기 및 장소 : 매월 1회 시범 아파트 선정하여 실시
(※ 세부일자 및 장소는 사전 협의를 통하여 선정한다)
 - ② 대 상 : 아파트 입주민, 동대표, 관리사무소장 등
 - ③ 내 용 : 대피요령, 소화기 작동법, 119 신고방법 교육
아파트 특정지점 화재발생 가정하여 대피훈련 실시
 - ④ 장 비(인원) : 소방차 및 특정장비, 홍보유인물, 교관 등
2. 기타 교육훈련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
3. 기타 교육훈련 실시에 대한 홍보

제3조(정보의 교환 및 비밀유지)

1. 양 기관은 추진사항에 대하여 상호 신뢰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교환하기로 한다.
2. 양 기관은 이와 관련하여 인지 또는 취득한 사항을 업무처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.

제4조(협약기간)

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.

제5조(기타)

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조문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본 협약의 목적에 맞도록 협의하여 결정한다.

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 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

2015년 4월 일

강남구청장

강남소방서장